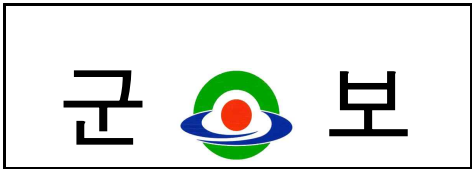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24호 2024. 4. 17.(수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4-755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
예 천



1. 조례명 :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2. 개정이유

예천군청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 외의 목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건강 증진 프로그램 및 단체보험 가입비의 지원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 능력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은 별도의 예산목으로 운영(안 제6조)

- 제9호 및 제13호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의 예산항목(공공운영비 등)으로도 편성할 수 있다.

나. 후생복지사업에 근골격계질환 건강프로그램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사항을 명시(안 제6조제12호, 제13호)

- 제12호 : 근골격계질환 예방(재활)프로그램 지원
- 제13호 :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

4. 개정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행정지원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rrtt6970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행정지원실

3) 팩스 : 054-650-630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(전화 : 054-650-6842)

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제9호 및 제13호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외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6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근골격계질환 예방(재활)프로그램 지원

13.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6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 ----- ----- <u>. 단, 제9호</u> <u>및 제13호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외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.</u>
1. ~ 11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11. (현행과 같음) <u>12. 근골격계질환 예방(재활)프로그램 지원</u>
<u><신설></u>	<u>13.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</u>
<u>12. (생략)</u>	<u>14. (현행 제12호와 같음)</u>